공고 제 51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06월 30일

가좌3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조 *희	조 *희 1991-04-15	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(가좌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6-30